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 등 지역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
진입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 삭제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4. 11. 14. ~ 12. 4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(☎ 2133-3239)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,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및 의원의”를 “본인과 그”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배우자등”이라 한다) 및 의원의 배우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”을 “결산검사기간”으로, “결원된 때는”을 “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,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.</u> 다만,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서울특별시 등"이라 한다)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<u>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</u>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<u>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(이하 "검사기간"이라 한다) 중 결원된 때는,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다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본인과 그</u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배우자등"이라 한다) 및 의원의 배우자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결산검사기간</u>-----</p> <p>----- <u>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</u>-----</p> <p>-----</p>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주무관(2133-3239)